

2026년도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사업 공고

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3조의4에 따른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 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1. 26.
산업통상부 장관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자체적으로 공급망 위기 대응을 하기 어려웠던 소부장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역량 확보 지원

□ 모집규모 : 공급망 관리가 필요한 기업 15개사 내외

□ 지원기간 : 사업개시일 ~ 2026. 12. 31 (사업별 상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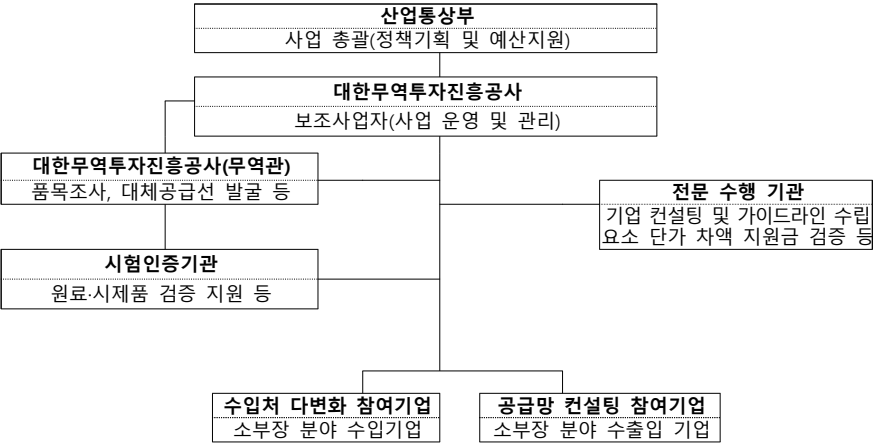
□ 사업내용

- (수입처 다변화 지원) 수입 대상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원부자재의 대체수입처를 발굴하고, 새로운 수입처 원료를 활용한 제품 생산을 지원
- (공급망 컨설팅 지원) 소부장 중소·중견기업의 공급망 규제 대응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실행 과제 컨설팅 제공

□ 지원요건

-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교란에 대비하여 원부자재 수급 및 생산 안정화 필요성이 있는 국내 소부장 기업

□ 추진체계



2. 지원내용

□ 세부 지원내용

구분	수입처 다변화 지원	공급망 컨설팅 지원
지원대상	수급 차질 위험도가 높은 원부자재를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처 다변화를 희망하는 소부장 중소중견 기업	글로벌 공급망 규제대응 및 자립화·다변화·자원확보 등을 희망하는 소부장 중소중견 기업
지원규모	10개사 내외 (기업당 5천만원 한도)	5개사 내외 (기업당 5천만원 한도)
지원기간	사업개시일 ~ '26.12월	사업개시일 ~ '26.12월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(대체수입처 발굴·현장검증) 대체수입처 발굴, 해외 무역관을 통한 스펙 검증 및 현장 방문○ (샘플원료 구매) 대체수입처 샘플 구입 관련 비용 지원○ (시험인증) 시험인증기관을 통한 원료·시제품 검증 지원○ (시운전 지원) 대체수입처에서 구매한 원료를 활용한 시제품 생산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(규제대응) 기업 공급망 위험 요소 분석 및 국가별 최적화 전략 제시 등○ (자립화) 국내 생산기반 구축, 자립화 R&D 성과와 연계된 공정개선, 시험·인증 등○ (다변화) 해외 법인설립, 설비증설 위한 정보·규제·회계·물류 분석 등○ (자원확보) 자원확보법인 설립, 재자원화 시험·인증 등

* 지원 기간 및 지원예산 등은 희망 기업 수와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3. 세부 추진 내용 및 절차

□ 수입처 다변화 지원

구분	내용	업무 수행자
사업공고 및 기업모집	○ 소부장 공급망 안정 종합지원사업 통합 공고 실시	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
↓		
기업 선정	○ 기업 평가 및 선정 (선정평가위원회)	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
↓		
대체수입처 발굴 현장검증	○ 기업 수요, 무역통계/DB 활용, 대체 공급선 발굴 대상 국가 선정 ○ 샘플 수입 대상 공급선 발굴 및 현장검증	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, 해외무역관
↓		
샘플원료 구매	○ 운영 기관 및 참가기업 협의 하에 최종 구매 원료 결정	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, 해외무역관, 참가기업
↓		
원료 시험인증	○ 공인 시험인증기관 통한 원료 스펙 검증, 시운전 투입 가능 여부 결정	시험인증기관, 참가기업
↓		
시운전 및 시제품 생산	○ 시운전 추진 및 시제품 생산 ○ 시제품의 기존 제품 대체 가능성 검증 (시험인증기관 인증)	시험인증기관 참가기업
↓		
결과 보고· 정산	○ 결과 확인 및 후속 지원 ○ 소요 비용 검토 및 이체 (회계법인을 통한 사후 원가 검증 실시)	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

□ 공급망 컨설팅 지원

구분	내용	업무수행자
사업공고	○ 소부장 공급망 안정 종합지원사업 통합 공고 실시	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
↓		
기업선정	○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선정평가	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
↓		
컨설팅 수행	○ 수행기관에서 협의된 과업 범위에 따른 컨설팅 수행	전문 컨설팅 수행 기관
↓		
결과보고	○ (수행기관) 컨설팅 수행 결과 보고 ○ (참가기업) 만족도, 지급 동의, 기업부담금 납입확인 등	전문 컨설팅 수행 기관, 참가기업
↓		
검토 및 정산	○ 소요 비용 검토 및 비용 지급	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

* 추진 일정은 기업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4. 신청방법

□ 신청방법

구분	수입처 다변화 지원	공급망 컨설팅 지원
신청기간	'26.1.26(월) ~ '26.2.27(금) 18시까지	'26.1.26(월) ~ '26.2.27(금) 18시까지
신청방법	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*기업 회원가입 후 로그인 → 「수입처 다변화 지원사업」 신청	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*기업 회원가입 후 로그인 → 「공급망 컨설팅 지원사업」 신청

□ 진행절차 * 상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

○ (수입처 다변화 지원)

신청·접수 (1.26~2.27) 사업신청서 작성·제출	⇒	서류검토 (2.27~3.6) 신청 자격 적격여부 검토	⇒	평가·선정 (3.9) 내·외부 전문가 평가 및 선정	⇒	선정결과 발표 (3.11) 선정결과 개별 통보
--	---	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○ (공급망 컨설팅 지원)

신청·접수 (1.26~2.27) 사업신청서 작성·제출	⇒	서류검토 (2.27~3.6) 신청 자격 적격여부 검토	⇒	평가·선정 (3.9) 내·외부 전문가 평가 및 선정	⇒	선정결과 발표 (3.11) 선정결과 개별 통보
--	---	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□ 제출서류

연번	제출서류	제출방법
1	사업신청서 등 신청서류	(수입처다변화) 붙임1 활용 (공급망컨설팅) 붙임2 활용
2	사업자 등록증명	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
3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(기업 및 대표자/실질경영주)	
4	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	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등
(선택)	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서	소부장넷 등

* 상기 필수서류를 포함한 운영기관 요청서류의 제출 거부, 고의 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될 수 있음

**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, 그 책임은 제출기업에 있음

***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서는 선택사항으로 제출시 평가 가점대상(미제출시에도 평가 가능)

□ 신청 제외 대상

-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은 본 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
신청 제외 대상

- ◆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- ◆ 신청일 현재 **국세·지방세를 체납**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- ◆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**불량거래처로 등재**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**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**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 - 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가능
- ◆ 그 밖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운영기관)가 지원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※ 신청기업은 수출바우처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,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.

5. 기업선정

□ 평가방법

- (사전검토) 사업신청서, 제출서류, 지원요건 등 사전검토
- (위원회 구성) 관련 분야 전문가, 사업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6명 내외 구성
- (평가방식) 발표평가
 - 신청기업의 사업신청 내용 발표, 질의응답(Q&A) 중심으로 진행
 - * 발표평가가 원칙이나, 선정기업 수가 많을 경우 서면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

□ 평가기준 : 사업추진 적합성 · 필요성 · 효과성 등 종합 평가

□ 선정방법 :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'산술평균점수'를 산출하여 6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대상 선정

6. 유의사항

□ (공통) 부정 수급 등에 대한 조치사항

- 위조·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 적발 시 국가보조금법 관계 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
- 사후적으로 허위·과다청구 등 부정 수익이 밝혀질 경우, 국고 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또는 공동재정환수법 등에 따른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
□ (수입처다변화) 사업기한 준수 및 비용 정산에 대한 유의사항

- 참가기업은 공고문에 기재된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 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음
- 기업 총 지출액*의 80% 지원(기업별 5천만원 상한 적용)
 - * 샘플 구입비 한도 : 4천만원

[기업지원금 예시]

<<예시1>> (기업 총 지출) 샘플원료 6,000만원, 시험인증·시운전 2,000만원

=> (지원) (샘플구입비 4,000만원^{한도적용} + 시험인증·시운전 2,000만원) * 80%
= 4,800만원 지원

<<예시2>> (기업 총 지출) 샘플원료 3,000만원, 시험인증·시운전 5,000만원 지출

=> (지원) (샘플구입비 3,000만원 + 시험인증·시운전 5,000만원) * 80% = 6,400만원
=> (5,000만원^{한도적용}) 5,000만원 지원

<<예시3>> (기업 총 지출) 샘플원료 4,000만원, 시험인증·시운전 2,250만원 지출

=> (지원) (샘플구입비 4,000만원 + 시험인증·시운전 2,250만원) * 80% = 5,000만원 지원

- 수입처다변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기업이 먼저 지출하고, 향후 KOTRA가 증빙자료 검토 후 사후 정산함
- 참가기업은 ① 대체수입처 발굴 및 현장검증, ② 샘플 구입, ③ 시험 인증, ④ 시운전의 전 과정 수행 필요, 중도 이탈 시 사업비용 지원 불가

* 단,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급 불가, 수입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는 운영 기관 검토 후 예외로 적용

- 참가기업은 비용 지출 전 KOTRA에 승인요청 공문을 송부해야 하며, 공문을 통해 승인을 득한 건만 실집행액으로 인정해 사후 정산 요청 가능 (KOTRA의 사전 승인 없이 지출된 사업비용 지원 불가)

* 송금·이체증 및 세금계산서 날짜가 KOTRA 승인공문 날짜 이후인 건에 한해 정산 요청 가능하며 사업비 실집행액에서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지원

- KOTRA는 참가기업 비용지원 관련 예산 집행 필요성 및 적정성 평가를 위해 사업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음

- (대상) 샘플 원료, 시험인증 서비스, 시운전용 소모품 등 구매 비용
- (항목) 구매 필요성, 가격 적정성 등
- (위원회) 관리기관, 운영기관, 회계법인, 시험인증기관·국책연구소 등의 소재 전문가 등

* 참가기업은 KOTRA가 사업운영위원회 개최를 위해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하며,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이 미흡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□ (공급망컨설팅) 사업 신청 및 비용 정산에 대한 유의사항

- 참가기업은 신청시 컨설팅 수행기관과 함께 과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과업이 포함된 컨설팅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
- **기업 총 지출액*의 80%** 지원(기업별 5천만원 상한 적용)하고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은 모두 컨설팅 수행기관에 직접 지급

* 기업부담금 : 총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

[기업지원금 예시]

<<예시1>> (기업 총 지출) 제3국 설비 이전을 위한 법률컨설팅 1억원 계약 후 컨설팅 진행

=> (지원) (총 컨설팅 1억원)*80% = **8,000만원** => (5,000만원^{한도적용}) **5,000만원 지원**

<<예시2>> (기업 총 지출) 재자원화 제품 시험·인증 컨설팅 3,000만원 계약 후 컨설팅 진행

=> (지원) (총 컨설팅 3,000만원) * 80% = **2,400만원 지원**

- 컨설팅 비용은 참가기업이 먼저 기업부담금을 지출하고, 사업 종료 후 KOTRA는 사업 결과 및 기업부담금 집행 증빙자료 등을 검토 후 정부지원금을 수행기관에 직접 지급함
- KOTRA는 컨설팅의 적정성 평가 또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시 사업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수시평가(중간보고) 등을 할 수 있음

7. 관련규정

□ 근거 법률

-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
-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시행령

□ 보조사업 관련 법령

-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-588호, 2021.8.5.)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시행령

8. 문의처

구분	담당
주무부처	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-203-4903
운영기관	(수입처다변화 지원)
	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02-3460-3325
	(공급망컨설팅 지원)
	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02-3460-7635

- 붙임 : 1. 2026년 수입처 다변화 지원사업 신청서
2. 2026년 공급망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